

대전지방법원 2020. 10. 20 선고 2019가단2272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단체

피고B

변론 종결2020. 10. 6.

판결 선고2020. 10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소외 C에게 충남 금산군 D 전 522m²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04. 2. 19. 접수 제235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오명희

별지